DMC SK VIEW IPARK Foret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견본주택 운영 안내

■ DMC SK VIEW IPARK Foret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견본주택(http://www.dmc-skviewipark.co.kr)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청약 접수 이후 청약자를 대상으로 방문 예약을 통해 견본주택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방문일 및 예약 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예약일시 이외에는 방문 불가)
 ※ 청약 접수자 견본주택 방문시 접수자 본인 1인만 입장(청약접수 인증 서류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참)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에 한해 최대 1인까지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인의 경우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인원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방문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예약 예정(예약일시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서류 접수일에 견본주택 방문시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출입국사실증명서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에 한해 최대 1인까지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체결일에 견본주택 방문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열화상카메라, 비접촉체온계, 소독발판, 손소독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2-309-1464)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이 공고문과 관계법령이 상이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8.0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의거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9조, 제25조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8.08.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2에 의거 주택공급대상에 포함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손녀를 포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

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전 공급계약된 건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가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형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본 아파트에 '1순위 해당지역 가점제'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가 아니며, '주택 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자
- 1순위 청약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각목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향후「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동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2020년 4월 17일 이전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제곱미터 이하–당첨일로부터 5년, 85제곱미터 초과–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제곱미터 이하–당첨일로부터 3년, 85제곱미터 초과–당첨일로부터 1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당첨일로부터 10년 /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 주택-당첨일로부터 7년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m)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단 특별공급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의 주택으로서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 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형의 경우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유지됩니다.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세대주 및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 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위반에 따른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2020년 4월 17일 개정 시행)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 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과밀억제권역이며,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특별공급으로 선정된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www.applyhome.com)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일반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2년 미만/인천시/경기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5일간)	계약체결(4일간)
일정	2020년 08월 18일(화)	2020년 08월 19일(수)	2020년 08월 20일(목)	2020년 08월 21일(금)	2020년 08월 27일(목)	2020년 08월 31일(월) ~ 2020년 09월 04일(금)	2020년 09월 08일(화) ~ 2020년 09월 11일(금)
방법 및 시간	인터넷청약 (08:00~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10:00 ~ 16:00 ※ 구비서류 지참 방문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해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6:00
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8길 19-4 일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에서 "청약Home"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20.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은평구 도시계획과-1073호(2020.07.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20가길 9(수색동 341-6번지) 일원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5층, 지상 19층 21개동 총 1,464세대 중 일반공급 1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총 73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민영주택	2020-000899	1	39.9700	39	39.9700	18.5720	58.5420	40.4440	98.9860	23.1809	69	7	7	12	2	28	41	6
		2	49.9200	49	49.9200	23.7590	73.6790	50.5120	124.1910	29.0835	51	5	5	10	2	22	29	4
		3	53.9500	53	53.9500	23.8130	77.7630	54.5900	132.3530	30.9949	16	2	2	3		7	9	1
		4	59.9600A	59A	59.9600	21.0000	80.9600	60.6710	141.6310	33.1677	3			1		1	2	3
		5	59.9700B	59B	59.9700	21.4900	81.4600	60.6810	142.1410	33.2871	4			1		1	3	1
		6	76.6500	76	76.6500	23.8890	100.5390	77.5590	178.0980	41.7076	9	1	1	2		4	5	6
		7	84.9500A	84A	84.9500	24.5680	109.5180	85.9550	195.4730	45.7766	18	2	2	4	1	9	9	18
		8	84.9400B	84B	84.9400	26.2080	111.1480	85.9460	197.0940	46.1562	4			1		1	3	4
		9	102.7400	102	102.7400	24.4280	127.1680	103.9580	231.1260	54.1259	4						4	4
		10	120.0400	120	120.0400	29.8370	149.8770	121.4630	271.3400	63.5434	5						5	2
합계											183	17	17	34	5	73	110	49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세대별 대지지분은 소수점 5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하여 면적 합산, 확정 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으로 소수점 2째자리까지 표현하였고, 주거 공용면적/주택공급면적/기타 공용면적/계약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으로 소수점 3째자리까지 표현하여 면적 합산, 확정 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청약관리 시스템에 소수점 4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 "0"을 추가하였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견본주택과 인허가청에 비치한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각종 면적과 대지지분은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발생한 경우 분양 당시의 분양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또는 세대별 각종 면적 및 대지지분의 5% 이내의 증감,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시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함.(최하층 우선 배정세대(49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183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전용면적	약식 표기	총 세대수	동/호별	층 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 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1.03.10	2021.08.10	2022.01.10	2022.06.10	2022.10.10	2023.02.10	입주지정 기간
39.9700	39	69	104동 5, 6, 7, 9, 10호 105동1, 2, 3, 4호	1	4	131,996,800	185,303,200	0	317,300,000	31,730,000	31,730,000	31,730,000	31,730,000	31,730,000	31,730,000	31,730,000	31,730,000	63,460,000
				2	4	136,489,600	191,610,400	0	328,10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65,620,000
				3	6	140,982,400	197,917,600	0	338,90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67,780,000
				4	6	145,516,800	204,283,200	0	349,80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34,980,000	69,960,000
				5층 이상	49	150,009,600	210,590,400	0	360,60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36,060,000	72,120,000
49.9200	49	51	105동7,8호 110동7호 111동3,4호	1	4	166,566,400	233,833,600	0	400,40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40,040,000	80,080,000
				2	4	172,224,000	241,776,000	0	414,0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82,800,000
				3	4	177,923,200	249,776,800	0	427,70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85,540,000
				4	4	183,580,800	257,719,200	0	441,30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44,130,000	88,260,000
				5층 이상	35	189,280,000	265,720,000	0	455,0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91,000,000
53.9500	53	16	116동 1, 7호	1	1	174,387,200	244,812,800	0	419,200,000	41,920,000	41,920,000	41,920,000	41,920,000	41,920,000	41,920,000	41,920,000	41,920,000	83,840,000
				2	1	180,336,000	253,164,000	0	433,50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86,700,000
				3	1	186,284,800	261,515,200	0	447,800,000	44,780,000	44,780,000	44,780,000	44,780,000	44,780,000	44,780,000	44,780,000	44,780,000	89,560,000
				4	2	192,233,600	269,866,400	0	462,10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92,420,000
				5층 이상	11	198,182,400	278,217,600	0	476,40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95,280,000
59.9600A	59A	3	101동3호 103동1호 119동3호	1	3	202,467,200	284,232,800	0	486,700,000	48,670,000	48,670,000	48,670,000	48,670,000	48,670,000	48,670,000	48,670,000	48,670,000	97,340,000
59.9700B	59B	4	113동 2호	2	1	197,059,200	276,640,800	0	473,70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47,370,000	94,740,000
				3	1	203,590,400	285,809,600	0	489,40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97,880,000
				5층 이상	2	216,569,600	304,030,400	0	520,60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104,120,000
76.6500	76	9	109동1,2,3,4호 113동3,4호	2	6	248,851,200	349,348,800	0	598,200,000	59,820,000	59,820,000	59,820,000	59,820,000	59,820,000	59,820,000	59,820,000	59,820,000	119,640,000
				3	3	257,046,400	360,853,600	0	617,90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123,580,000

84.9500A	84A	18	102동1,2,3,4호 103동3,4호 106동4,5호 107동3,4,5호 115동3,4,5호 117동1호 118동1호 119동1호 120동9호	1	18	273,644,800	384,155,200	0	657,80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131,560,000
84.9400B	84B	4	108동2호 117동2호 118동2호 119동2호	1	3	275,267,200	386,432,800	0	661,700,000	66,170,000	66,170,000	66,170,000	66,170,000	66,170,000	66,170,000	66,170,000	66,170,000	132,340,000
				2	1	284,668,800	399,631,200	0	684,300,000	68,430,000	68,430,000	68,430,000	68,430,000	68,430,000	68,430,000	68,430,000	68,430,000	136,860,000
102.7400	102	4	107동1,2호 114동1,3호	1	1	308,297,600	393,456,727	39,345,673	741,100,000	74,110,000	74,110,000	74,110,000	74,110,000	74,110,000	74,110,000	74,110,000	74,110,000	148,220,000
				2	2	318,780,800	406,835,636	40,683,564	766,300,000	76,630,000	76,630,000	76,630,000	76,630,000	76,630,000	76,630,000	76,630,000	76,630,000	153,260,000
				3	1	329,305,600	420,267,636	42,026,764	791,600,000	79,160,000	79,160,000	79,160,000	79,160,000	79,160,000	79,160,000	79,160,000	79,160,000	158,320,000
120.0400	120	5	108동1호 113동1호	2	2	365,705,600	466,722,182	46,672,218	879,100,000	87,910,000	87,910,000	87,910,000	87,910,000	87,910,000	87,910,000	87,910,000	87,910,000	175,820,000
				3	2	377,769,600	482,118,545	48,211,855	908,100,000	90,810,000	90,810,000	90,810,000	90,810,000	90,810,000	90,810,000	90,810,000	90,810,000	181,620,000
				4	1	389,792,000	497,461,818	49,746,182	937,0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187,400,0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감정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으로 소수점 2째자리까지 표현하였고, 주거 공용면적/주택공급면적/기타 공용면적/계약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에서 단수조정 방식으로 소수점 3째자리까지 표현하여 면적 합산, 확정 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발생한 경우 분양 당시의 분양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또는 세대별 각종 면적, 대지지분의 5% 이내의 증감,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시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에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39	49	53	59A	59B	76	84A	84B	102	120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3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4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2
		인천광역시	1										1
		경기도	1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50%)		3	3	1			1	1				9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 인천(50%)		4	2	1				1				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9	7	2	1	1	2	3	1			26
		일반공급(25%)	3	3	1				1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2					1				5
합 계			28	22	7	1	1	4	9	1	0	0	7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면적별 청약 예치금(특별공급, 일반공급 기준)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고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r>
<tr><td rowspan="3">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td><td>배정세대수</td><td>- 17세대, 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td></tr>
<tr><td>신청자격</td><td>-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table>
<tr><th>추천기관</th><th>청약통장 구비여부</th></tr>
<tr><td>장애인(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등), 국가유공자 등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td><td>청약통장 필요 없음</td></tr>
<tr><td>장기복무제대군인(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복무 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 근로자(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td><td>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해당 요건을 갖춘 분</td></tr>
</table></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공급 세대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및 제47조의2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r><td rowspan="3">다자녀
특별공급</td><td>배정세대수</td><td>- 17세대, 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분양가격 9억 이하</td></tr>
<tr><td>신청자격</td><td>-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신청자 등본 상에 기재되어야 함)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한 경우만 해당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에 의거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td></tr>
</tabl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 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 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34세대, 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 등을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기준의 12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의거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30% 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 13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 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나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하 "직인날인" 서류 동일 적용)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 또는 홈텍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72호(2018.5.8.)]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5세대, 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경과/ 지역별 예치금 충족) -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에 의거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함.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2018.08.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함. ②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8.08.03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 (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확정된 자,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시 가입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시 당첨자는 당사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순 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10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 1순위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85㎡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공급함.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 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 소형·저가 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미혼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 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3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단,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 내용은 무허가 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3. 부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당 사업지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시 추첨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계약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Ⅳ. 신청 일시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자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8.18(화) (인터넷청약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해당	2020.08.19.(수) 08:00~17:30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아래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2020.08.20.(목) 08:00~17:30		
	2순위		2020.08.21.(금) 08:00~17:30		

- 스마트폰 앱에서 "청약Home" 검색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 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전 은행 청약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 신청」⇒「APT청약 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 앱에서 "청약Home" 검색 및 설치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 신청」⇒「APT청약 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 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인터넷)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영업점 영업시간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노인・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 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합니다.

구 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자 ※ 경쟁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공급 구비서류(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제외) • 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인터넷청약(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발급 필수(대리발급분은 접수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 변동일 / 변동 사유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가족 포함)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2018년 1월 1일 ~현재로 설정)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피부양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혼인관계 증명서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자녀일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또는 해당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2018.01.01.~모집공고일 현재까지)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기록대조일 : 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비속은 1년)
제3자 대리인 접수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당첨자 서류 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청약자 본인발급 필수(대리발급분은 접수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일반공급 구비서류(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 사유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기록대조일: 존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비속은 1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특별공급	○	○	특별공급 신청자격 별 증명서류	-	• 모집공고 '특별공급 구비서류' 참조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 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접수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당첨자 서류 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8.03.(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의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 의사를 표시한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 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 됨.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mc-skviewipark.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Ⅴ.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시: 2020.08.27(목)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 2020.09.08.(화)~09.11(금),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8길 19-4**)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감정원(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8.27(목) ~ 2020.09.05(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8.2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당사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한	제출 대상	제출 장소	유의사항
2020.08.31.(월) ~ 2020.09.04.(금) 10:00~16:00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당사 견본주택(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8길 19-4 일대)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세대"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당첨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IBK기업은행	024-096718-01-026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2명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2동 904호 홍길동(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20904홍길동'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최소 1개월의 환불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

가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 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월 : 2023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포함)	O		자격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O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 필수 / 대리인 발급분은 접수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계약 불가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서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용도 : 아파트 분양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계약자 본인 발급 필수 / 대리인 발급분은 접수 불가)
		O	위임장	계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O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한국감정원 발급)
비고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8.03.(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 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발코니 확장시 추가 제공 품목
		계약시	아파트 중도금 1회차 납부일 (2021년 03월 10일)	입주지정일	
49	6,520,000	652,000	652,000	5,216,000	전동 빨래 건조대, 붙박이장 1개소(침실2)
53	7,410,000	741,000	741,000	5,928,000	전동 빨래 건조대, 붙박이장 1개소(침실2)
59A	10,550,000	1,055,000	1,055,000	8,440,000	전동 빨래 건조대, 붙박이장 1개소(침실2)
59B	11,230,000	1,123,000	1,123,000	8,984,000	전동 빨래 건조대, 붙박이장 1개소(침실2)
76	12,410,000	1,241,000	1,241,000	9,928,000	전동 빨래 건조대, 붙박이장 1개소(침실2)
84A	12,800,000	1,280,000	1,280,000	10,240,000	전동 빨래 건조대, 붙박이장 1개소(침실2)
84B	12,730,000	1,273,000	1,273,000	10,184,000	전동 빨래 건조대, 붙박이장 1개소(침실2)
102	13,860,000	1,386,000	1,386,000	11,088,000	전동 빨래 건조대, 붙박이장 1개소(침실2)
120	15,320,000	1,532,000	1,532,000	12,256,000	전동 빨래 건조대, 붙박이장 1개소(침실2)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본 공사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확장형과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발코니 미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규격, 천장 기기류(전등, 환기구, 스프링클러 등) 및 스위치 등의 배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로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미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39형은 확장형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 39형 침실 붙박이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 금액	침실 붙박이장 선택 시 추가 제공 품목	비고
39	1,700,000	전동 빨래 건조대	상세 사항은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선택1		선택2	
	공급 금액	실내기 설치 위치	공급 금액	실내기 설치 위치
39	2,140,000	거실	3,300,000	거실+침실1(안방)
49	3,480,000	거실+안방(침실1)	4,75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
53	3,490,000	거실+안방(침실1)	4,77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
59A	3,700,000	거실+안방(침실1)	6,07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
59B	3,700,000	거실+안방(침실1)	6,07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
76	3,710,000	거실+안방(침실1)	6,08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
84A	5,110,000	거실+안방(침실1)+주방	7,640,000	거실+안방(침실1)+주방+침실2+침실3
84B	5,110,000	거실+안방(침실1)+주방	7,640,000	거실+안방(침실1)+주방+침실2+침실3
102	5,120,000	거실+안방(침실1)+주방	8,720,000	거실+안방(침실1)+주방+침실2+침실3+침실4
120	5,570,000	거실+안방(침실1)+주방	9,060,000	거실+안방(침실1)+주방+침실2+침실3+침실4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 및 침실1에 골조 매립 시공하는 냉매배관은 제외되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골조 매립 냉매배관 시공 공사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하며,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일은 추후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며,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안방, 벽걸이형)만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 공사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을 취소할 경우 기본 제공 품목인 거실(스탠드형) 및 침실1(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의 시공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감지기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 사항은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 금액	설치 형태	비고
전체 타입	450,000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SK매직(ERA-BTH32)	상세 사항은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은 발코니 확장시 선택이 가능하며, 유상 옵션 금액은 기존 가스쿡탑 미설치, 소방 법령에 따른 자동식소화기 형식 변경 등의 증감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냉장고장 + 김치냉장고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 금액	설치 형태	비고
59A, 59B, 76, 84A, 84B, 102, 120	300,000	냉장고장 + 김치냉장고장	상세 사항은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냉장고장 + 김치냉장고장 발코니 확장시 선택이 가능하며, 입주자가 보유한 제품이나 일부 제품은 설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유상 옵션 계약 체결 전 설치 공간의 치수를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다음 · 외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 금액	설치 형태	비고
39	2,400,000	주방 상판 및 주방 벽 엔지니어드스톤 마감	상세 사항은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환인하시기 바랍니다.
49	2,000,000		
53	2,200,000		
59A	3,200,000		
59B	2,800,000		
76	3,300,000		
84A	3,100,000		
84B	3,600,000		
102	3,300,000		
120	3,600,000		

• 주방 엔지니어드스톤은 발코니 확장시 (39제외) 선택이 가능하며, 엔지니어드스톤의 자재 특성상 생산 시점에 따라 색상, 패턴 등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 조건 및 일정

유상옵션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39형 붙박이장	계약시	아파트 중도금 1회차 납부일 (2021년 03월 10일)	입주지정일
시스템 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맞춤형 냉장고장 + 김치냉장고장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안내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101동 ~ 110동 계약자	KB 국민은행	015401-04-320200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111동 ~ 121동 계약자	KEB 하나은행	231-910028-91304	에스케이건설(주)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공사 및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아파트 계약일에 선택과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공사 및 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중도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1동101호 홍길동 →"10101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Ⅶ. 유의 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합니다.
• 당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7년 7월 20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건축심의 신청 및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 평가결과 담보 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 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 금액을 책임지고 대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매도인의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을"은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39형 제외)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설계 도서상의 구조 방식이나 기초의 형식 등은 본 공사시 실제 지질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에 대해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시공사 브랜드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및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특성상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 담보대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면적 합산, 확정 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시 증감이 발생한 경우 분양 당시의 분양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또는 세대별 각종 면적, 대지지분의 5% 이내의 증감,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시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 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지역의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 즉 손실, 벌금, 과태료, 모든 민·형사 및 행정적인 문제는 계약자 본인이 해결 및 비용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도시가스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의 가스공급을 위하여 "본 아파트" 부지 내 지상식 지역정압실 설치 및 부지 무상제공을 하게 될 경우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청약 및 계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의 내용,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경관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영구배수시스템, 수목,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 및 유지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 학교, 연결녹지, 공원 및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은 시공사의 시공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분양홍보에 사용된 단지 모형, 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CG(조감도, 배치도, 광역 위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단위 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 투시도(색상, 구획선), 면적 및 도면 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안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단지 내 조경계획, 시설계획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서 대비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문주 및 기타 부속 시설물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을 촬영한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홍보에 사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감재 외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 상품(가구 및 집기류 등)를 표현한 것으로 분양금액 포함 여부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설계 일반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등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주동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 및 지붕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세대도 세대가 속한 동, 층, 향,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경관계획(외관, 그래픽, 조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구매를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가구 등의 크기, 폭, 높이 등에 따라 배치가 불가하거나 복도면 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기의 사유들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신고 등의 인·허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설계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등 수정
 -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의 변경
 - 현장 여건에 따른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위치 변경
 - 각 세대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주방 싱크볼, 가스쿡탑, 김치냉장고장, 냉장고장 및 보일러 등의 위치, 크기 및 형태 등의 변경
 - 주방가구 수납공간, 싱크볼, 쿡탑, 김치냉장고, 냉장고장 위치, 크기 및 형태 등 변경
 - 조경 계획(식재, 시설물, 포장, 부대시설) 및 대지조성 계획(법면 또는 사면, 석축, 옹벽, 배수, 포장)의 위치, 디자인, 색채, 수량, 종류 등
 - 본 아파트 부지 내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채광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옥외 경사로,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휀룸 등의 위치, 크기 및 형태 등의 변경
 -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 조경 식재, 조경 시설물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옥외 주민 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 분리 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
- 천연자재(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해당 시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 등 구조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 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은 해당 관청(사업승인권자)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공사)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조, 성능, 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 취향, 민원에 의한 설계 변경(견본주택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 외의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추가 설치, 교체, 위치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특기 시방서에 별도의 시공 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밥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인조석은 자재의 특성상 생산 시점에 따라 색상, 패턴 등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정 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씽크대, 주방가구, 신발장, 욕실 샤워부스 및 도기 하부 등 일부 공간은 바닥 난방이 제외됩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층·호수에 따라 코아 부분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 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동선, 기능·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아파트 건축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해 일부 조정되어 설계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대지와 인접한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과의 레벨차이로 조경석 쌓기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주변 계획레벨보다 대지레벨이 낮아 일부동의 경우 저층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부지는 도로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고, 시공, 시행자의 판단 또는 관할 시청, 구청과의 협의 등에 따라 이를 설치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세대 내 대피공간의 면적은 벽체 중심선 기준과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실별 MD계획은 미확정으로 향후 근린생활시설 분양시 MD 계획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주출입구 도로는 경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이 각 단지에 분산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청 등 관계기관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발생하여 세대가 증축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현황 / 단지배치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다리차 허용이 가능하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상가 주차장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 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 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완충녹지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시설 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 식재 및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주변의 인접건축물(기존 및 신축 건축물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단지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조경, 조명 등의 변경에 따라 먼지, 소음 발생,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 층,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천공권 및 사생활권 등이 일부 제한되거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및 계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의 내용,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우수조, 정화조, 제연휀룸 환기 시설, 실외기, 휴게 공간,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조경, 조명, 램프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등 각 부대복리시설의 옥상 또는 인접 부위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미관, 소음발생 등 일부 사생활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될 실외기의 위치는 변경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제한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등 각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환기구(D.A), 천창,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휀룸, 실외기, 환기구(D.A), 천창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천공권 및 사생활권 등이 일부 제한되거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 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본 공사시 변경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식재, 지상층 시설물, 동 출입구 형태,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는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아파트 입주민 및 소형주택(임대) 입주민, 근린생활시설 입주민 또는 사용자와 공용으로 사용되며, 주차장 구역은 별도 구획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파트 주동 / 공용부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 문주의 위치, 개수, 상세 계획(형태, 높이, 폭, 마감재, 컬러, 디자인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인근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등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코어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코어의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며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하여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PC 적용 여부 및 부위는 본 공사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높이, 마감재, 칼라 등 및 주차 구획의 개소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 계단실은 적절한 환기가 시행되지 않으면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 폭을 포함하며, 본 공사시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되는 구간은 주차라인을 마킹하지 않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단지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은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며, 입주민 전체가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옥탑 및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시행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지하층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유효통과높이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 2.3m, 차량 주차부 유효높이: 2.1m, 일부 택배차량통행 유효통과 높이 2.7m)
- 일부 주동(104동, 105동, 110동, 111동, 116동, 117동)은 택배보관소가 지상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지상에 택배차량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D, AV, EPS, TPS, S.T, AD, PIT 등의 내부벽체(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승강기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배기탑이 일부 동 옥상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일조,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신축 줄눈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레벨차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은 바닥 단차이가 있으며, 단차가 나는 부위에 차량 및 보행 통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소방서 요청으로 각 동 주변에 소방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설치 시에는 수목식재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잔디 또는 초화류만 식재될 예정이며, 저층 세대 소음피행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붕 및 옥탑에 위성 안테나, 피뢰침, 저수조, 조명, 태양광 발전 설비, 인명 구조 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천공권 및 사생활권 등이 일부 제한되거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일부 주동에 한하여 주동의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에 준하며, 사업 진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상부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 보행자 통로, 부대시설 등이 형성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 세대 및 인근 세대에 생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되어 환경권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의 높이, 필로티 개구부 크기 및 형태, 필로티 내부 천장 높이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옥탑프레임, 옥상조형물, 동 출입구, 저층부 석재, 측벽 조형물, 입면 문양, 측벽 문양, 코어 문양 등)의 형태, 마감재, 색채 및 재질은 상세계획에 따라 미관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로 입면 및 옥탑 구조물의 형태가 상이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동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시 계단실 방화구획 조건 충족을 위해 망입 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홀, 계단실의 창은 개폐가 안되는 고정형 또는 자동 개폐 장치가 창의 위치 등에 따라 혼용되어 설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 레벨, 평면 및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하부 부대복리시설 등 일부 마감은 지정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단지계획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지상층에서는 각 동 하부 필로티 또는 각 동 출입구를 통해 동별로 출입할 수 있고, 일부 주동 출입구는 1층이 아닌 지하층으로 출입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 하부에는 기계실,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 공용부에는 구조보강을 위한 노대가 설치되며,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불가하며, 노대 및 창호의 형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은 단지레벨계획에 따라 인접세대와 층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돌출형 오픈 발코니가 설치되며, 돌출형 오픈 발코니로 인한 창호, 공간 구성이 상이하여 가구 배치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세대는 오픈 발코니 출입문의 기능 향상을 위해 도어 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출입구 및 램프,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39, 49, 84A 타입이 설치되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동호수에 따라 동일 주택형에서도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 평면이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기본형 세대(39 타입), 발코니 확장형 세대(49,84 타입)를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미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시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 및 세대 내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단종, 품질 확보,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소방시설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벽, 거실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현관 바닥, 거실 벽, 욕실 바닥 및 벽, 발코니 바닥, 주방 벽, 49/53 세탁실 바닥 및 벽), 인조석(주방상판, 욕실젠다이, 파우더 상판)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인조석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의 냉장고, 김치냉장고의 설치 공간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제품에 따라 설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유리도어(여닫이, 픽스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침실2 또는 침실3)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됩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또한, 온수분배기 가림막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바닥은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거나 도장마감 처리되어 서랍, 문짝 혹은 빌트인 가전 개폐시 바닥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가구, 가전 등)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하실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1(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에어컨 설치는 입주자 공사분),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49, 84A 타입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미확장형은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물 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 단차 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형 선택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미확장형 선택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미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미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발코니 미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 반침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천장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필터가 설치되며,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의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따라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는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고 해당 세대에서 상부 세대의 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상층부 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도어, 창호류의 사양(유리, 창틀 디자인, 손잡이, 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 방향, 디테일 등)과 위치 등은 사용 환경, 시공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각 실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 외벽 마감재에 따라 창호류의 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의 유리 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SK smart home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K smart home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SK smart home과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K smart home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 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실제 주택에는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TV폰 후면에 주방 TV폰 전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 시공됩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도형 주동의 세대는 대피공간 발코니 없이 1개의 주동에 계단실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평형별 분전반 위치가 상이하오니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54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신발장, 화장실 샤워부스 및 도기 하부 등 일부 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에는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 및 대피공간 또는 유사구조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 저층부(3층 이하 일부 세대)를 제외한 세대 내의 대피 공간 및 유사 구조에 임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등 난방 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재질은 결로, 단열 등에 대한 성능 향상 등을 사유로 본 공사시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의 폭, 높이, 깊이는 세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농, 붙박이장 등)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 세대내 공사용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마감재 설치 전 폐쇄됩니다.
- 본 공사시 커튼박스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 커튼박스 및 우물천장의 깊이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의 설계는 사업의 진행 과정, 인허가청 등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단지 내 시설(건축, 토목, 조경 등)의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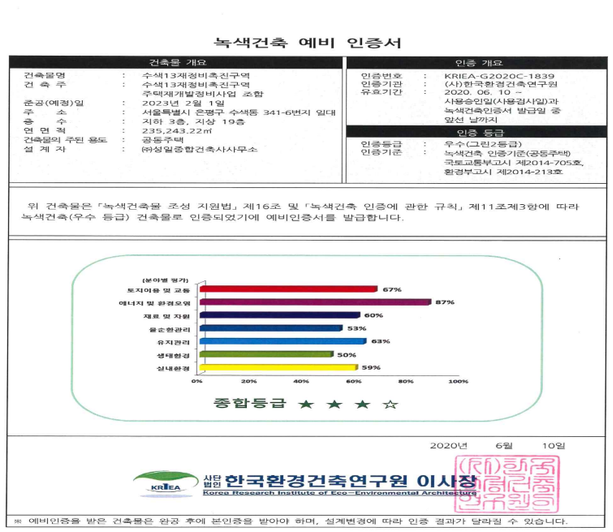
■ 기계 / 전기 / 설비
- 아파트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온수분배기는 주방 씽크 하부장에 설치되고, 급수급탕 분배기는 세대내 욕실 천장에 설치됩니다. 온수분배기 설치를 위한 하부장 타공으로 수납공간이 일부 제한되며, 급수급탕 분배기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욕실 천장에 설치됩니다.
- 욕실, 발코니 배수배관이 하부층 천장으로 계획됨에 따라, 해당층 내부에서 상부층 배관에 대한 점검 및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발코니 미확장 세대 포함)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본 공사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승강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침실2 또는 침실3)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통합(또는 개별)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 세대는 욕실 오배수배관이 층상배관 공법으로 시공 및 일부 마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승강기 홀은 각 세대 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홀은 채광창 창호의 유무 및 창호크기,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Ⅷ. 기타 사항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건 축 주	: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준공(예정)일	:	2023년 2월 19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대
층 수	:	지하 3층, 지상 19층
연 면 적	:	235,243.22㎡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일중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KRIEA-G2020C-1839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0. 06. 10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0년 6월 10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2. 신 청 자 :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3.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대
4. 성 능 등 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설계도서(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절약(리모델링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력벽 재사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 녹지율	★★
	인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톱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폐기물 최소화	지반조성 최소 여부	–
	생활용 가구재 사용여재 대해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단순배출량 정보 표시	★★★
우수부적 절감계획의 타당성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우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 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옥외환경	갈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제공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관련 조	★
세계적인 환경관리	환경을 고려한 환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원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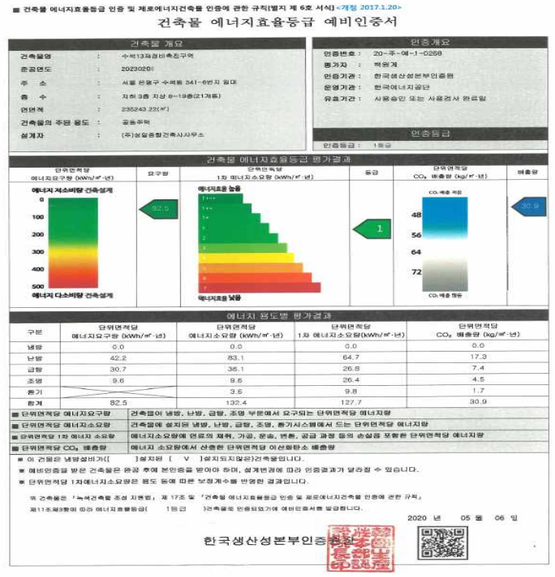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장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주택법」제21조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준공연도	:	2023년01
주 소	:	서울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대
층 수	:	지하 3층 지상 6~19층(17개동)
연면적	:	235243.22㎡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일중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0-주-에-1-0258
평가자	:	박원계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본평가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82.5	에너지효율 높음 1++ 1+ 1 2 3 4 5 에너지효율 낮음	1	CO_2 배출 적음 48 56 64 72 CO_2 배출 많음	30.9

에너지효율 낮음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2.2	83.1	64.7	17.9
급탕	30.7	36.1	26.8	7.4
조명	9.6	9.6	26.4	4.5
환기		3.6	9.8	1.7
합계	82.5	132.4	127.7	30.9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됨 [V]설치되지않음)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등급을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 년 05 월 06 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기 -「주택공급관한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창호	적용	KSF2292 2등급 이상제품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비 고
건축	㈜ 에이프러스씨엠 건축사사무소	4,459,462,700	
소방, 통신	㈜ 자람앤수엔지니어링	533,500,000	
전기	㈜ 이지건축	785,814,000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12020-101-0003600	육백팔십사억오십육만원정(₩ 68,400,56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 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 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시행자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68, 3층	110-82-16479
시공자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101-81-34928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아이파크몰 8, 9층	334-86-00815

■ 견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8길 19-4 일대

■ 분양홈페이지 : http://www.dmc-skviewipark.co.kr

■ 분양문의 : 02-309-1464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